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고소장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제3항).
- 경찰관서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상담소 등에 대한 형사사법정보의 사용방법 제한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5항).
- 경찰관서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요청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6항).

II. 검토의견

- 안 제9조의2제2항 이하에서는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안 제9조의2제2항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 중에서도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만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정보제공의 범위가 제한됨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피해관련정보’ 등과 같은 다른 약칭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9조의2제6항은 형사사법정보 제공에 대한 중지·제한 사유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정보보호조치 미이행과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 제9조의2제5항에 비추어볼 때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은 그 주체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제한되지 않음에도 안 제9조의2제6항의 문언상 그렇게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① (생략) ②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u>형사사법정보</u> (이하 “ <u>형사사법정보</u> ”라 한다) 중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및 피해자 <u>진술조서</u> 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u>형사사법정보</u> 중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및 피해자 <u>진술조서</u> (이하 “ <u>피해관련정보</u> ”라 한다)의 <u>제공</u> 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 정 의 견
③ 제2항에 따라 <u>형사사법정보</u>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u>경찰관서</u>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u>형사사법정보</u>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해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u>형사사법정보</u>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u>강구하도록 요청</u>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u>형사사법정보</u>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u>경찰관서</u>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u>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u>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⑦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u>피해관련정보</u>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u>피해관련정보</u>를 제공한 <u>경찰관서</u>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u>피해관련정보</u>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해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u>피해관련정보</u>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u>요청</u>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u>피해관련정보</u>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u>피해관련정보</u>를 제공한 <u>경찰관서</u>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u>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공한 피해관련정보에 대한 제5항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관련정보</u>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⑦ (개정안과 같음)

- 법무부는 안 제9조의2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정폭력 상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2차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나 법원이 기록을 보관 중인 경우에도 경찰 관서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나 피해자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등 피해자의 동의만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이 은 정)